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한정애・황 희・장철민

서영교 · 김준형 · 이학영

송옥주 • 박희승 • 민홍철

위성락 • 이병진 의원

(119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기부금 품법"이라 함)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.

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. 또한,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

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7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(금전은 제외한다)을 모집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재산의 기부 등) ① ~ ⑥	제8조(재산의 기부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	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
	그 운영을 위하여 「기부금품
	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
	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
	(금전은 제외한다)을 모집할 수
	<u>있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